

의안번호	2210399
의 퇴 인	한정애의원
회 답 일	2025. 9. 25.
추계번호	25B28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2,800만원(연평균 6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타인 사용제한 위반 행위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(안 제30조의2제3항)	교육	11	16.5	16.5	22	22	88	18
	홍보	30	45	45	60	60	240	48
합 계		41	61.5	61.5	82	82	328	66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교육 및 홍보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교육 및 홍보의 내용·방식, 실시횟수·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기간 동안 교육 및 홍보 실시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0조의2(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)	제30조를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예방 및 방지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, 자진신고의 접수·처리·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0조의2(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) 제1항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현행법¹⁾은 타인 사용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에 따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경우 세외수입(벌금수입)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- 현행 형벌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의 수입이 되나,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 수입을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현행 조항으로 인한 벌금 수입의 현황을 알 수 없으며, 개정안은 감경·면제의 기준·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벌금수입의 감소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	안 제30조의2 (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) 제3항	타인 사용제한 위반 행위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 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	○	• 유사사례 참조
		자진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진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자진신고의 접수·처리·조치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식, 이에 따라 필요한 하드웨어·소프트웨어의 종류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
자료: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제30조(타인 사용의 제한)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·구조, 교통·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,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
3.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·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4.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5.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9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7.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□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(안 제30조의2제3항)

- 현행법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(이하 “타인 사용제한”)하고 있음
-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, 본 추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교육 및 홍보 실시계획(안)에 따른 교육·홍보 실시단가 및 실시횟수를 참고하여 교육·홍보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 - 교육·홍보 실시횟수는 추계 첫해인 2027년 2회, 2028~2029년 3회, 2030~2031년 4회로 추계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’ 실시계획(안)

구 분		실시 내용	비 고
교육 내용		• (교육대상)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등 • (교육내용)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, 자진신고 절차 등 교육 • (실시시기) 연 2~4회 실시 ※ 첫해 2회 실시에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연 4회 실시 필요	
교육 비용 (1회 기준)	강사료	• 2명 × 30만원(1시간) × 3시간 = 180만원	- 한국HRD협회 기준 단가 적용
	기획·운영 인력	• 2명 × 25만원(1일) × 2일 = 100만원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 참조(교육 관련 기획/PM급 인력)
	장소 대관비	• 50만원(1일)	- 서울시 공공시설 평균 대관비용
	교재·자료 제작비	• 100만원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 참조
	기타비용	• 120만원	- 소모품 구입 등
	합 계	550만원(1회)	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유사 사례(정보보호 수준강화 사업, 사이버 보안인력양성사업 등)의 교육 실시 단가 등을 참고하여 동 실시계획(안)을 작성함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3]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‘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’ 실시계획(안)

구 분		실시 내용	비 고
홍보 내용		•(홍보내용)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매체 광고, 관련 홍보 캠페인 등 실시 •(실시시기) 연 2~4회 실시 ※ 첫째 2회 실시에서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연 4회 실시 필요	
홍보 비용 (1회 기준)	기획·총괄 인력	• 1명 × 30만원(1일) × 10일 = 300만원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 참조(홍보 관련 기획/PM급 인력)
	디자인물 제작	• 50만원 × 4종 = 200만원	
	현장 부스 운영	• 300만원 × 1식 = 300만원	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사례 참조
	영상 제작	• 300만원 × 1편 = 300만원	
	디지털 매체 광고	• 200만원 × 1식 = 200만원	- 메타·구글 광고 평균 단가
	기타비용	• 200만원	- 소모품 구입, 성과보고서 작성 등
	합 계	1,500만원(1회)	

주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유사 사례(개인정보보호 행사 및 캠페인 운영사업, 휴대전화 부정가입 차단 강화사업 등)의 홍보 실시 단가 등을 참고하여 동 실시계획(안)을 작성함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에 따라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3억 2,800만원(연평균 6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타인 사용제한 위반행위의 예방·방지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홍보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회, 백만원)

구분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교육	교육 횟수(A)	2	3	3	4	4	—	—
	교육 단가(B)	5.5	5.5	5.5	5.5	5.5	—	—
	소계(C=A×B)	11	16.5	16.5	22	22	88	18
홍보	홍보 횟수(D)	2	3	3	4	4	—	—
	홍보 단가(E)	15	15	15	15	15	—	—
	소계(F=D×E)	30	45	45	60	60	240	48
합 계(C+F)		41	61.5	61.5	82	82	328	66

주: 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교육 및 홍보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교육 및 홍보의 내용·방식, 실시횟수·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2. 추계기간 동안 교육 및 홍보 실시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교육 및 홍보 실시계획(안)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교육 및 홍보의 내용·방식, 실시횟수·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,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